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1. . . (제 회)	

디 자 인 보 호 법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장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 제 처 심 사 전

1. 개정이유

기업은 비밀디자인을 디자인경영전략의 일환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비밀디자인의 물품명칭 및 분류는 공개사항으로 제품개발 전략이 경쟁사에게 노출됨에 따라 제품개발 전략 보호를 위해 비밀디자인 등록공보의 공개사항에서 ‘물품의 명칭 및 물품류’가 제외되도록 하고, 특허심판원 직제가 전면 개편됨(‘20.7.14)에 따라 3인 합의부 체계 운영을 위해 심판장의 자격요건에 대한 개정이 필요함

2. 주요내용

가. 비밀디자인의 비공개 항목 확대(안 제10조 제2항)

비밀디자인 등록공보의 공개사항에서 ‘물품의 명칭 및 물품류’를 제외함
나. 특허심판원의 심판장 자격요건에 대한 규정 마련(안 제8조 제2항 및 제3항)

심판장의 자격을 4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규정하여 심판장 직무를 수행할 과장급 심판장 확보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0. 00. 00.~00. 00.) 결과, 특기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 제2항 중 “제7호부터”를 “제2호 및 제7호부터”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중 “심판관의 자격”을 “심판관 등의 자격”으로 하고,
같은 조의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 ② 법 제132조 제1항에 따른 심판장이 될 수 있는 사람은 특허청
또는 그 소속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같은 기
관의 4급 이상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8조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심판관 또는 심판장 자격의 직급에 해
당하는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변리사 자격이 있는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각각 심판관
또는 심판장이 될 수 있다.

같은 조 제4항을 종전의 제3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8조(심판관의 자격) ① (생략) <u><신 설></u> ② 제1항에 따른 심판관 자격의 직급에 해당하는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변리사 자격	제8조(심판관의 자격)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132조 제1항에 따른 심판장이 될 수 있는 사람은 특허청 또는 그 소속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같은 기관의 4급 이상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특허심판원에서 2년 이상 심판관으로 재직한 사람 2. 제1항에 따른 심판관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3년 이상 특허청 또는 그 소속기관에서 심사 또는 심판사무에 종사한 사람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심판관 또는 심판장 ----- ----- -----

이 있는 사람은 <u>제1항</u> 에도 불구하고 <u>심판관</u> 이 될 수 있다.	----- <u>제1항 또는 제2항</u> ----- -- <u>각각 심판관 또는 심판장</u> ----- -----.
③ (생 략) 제10조(디자인공보) ① (생 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제10조(디자인공보)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90조제3항 및 제212조 제4항에 따라 등록디자인공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한다. 다만, 법 제43조에 따른 비밀 디자인의 경우 <u>제7호부터</u> 제9호까지의 사항은 디자인등록출원인 청구한 비밀 지정기간이 지난 후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 ----- ----- ----- ----- <u>제2호 및 제7호부터</u> ----- ----- -----.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디자인심사정책과	
연 락 처	042-481-8602